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수신	충청남도의회
발신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47개 단체
제목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송일	2024년 11월 4일(월)
매수	총 10장

1. 충청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 단체(전체 단체명 하단 참조)는 지난 10월 29일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3. 작년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난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작된 열람제한은 이후 전국으로 퍼져 공공 도서관의 자유로운 운영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되었던 사건이 재조명되며 책과 도서관을 둘러싼 검열과 공공성 침해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의회가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할 위험을 내포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유해성 논란’ 이전에 검열의 위험과 지적 권리의 침해를 먼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는 자칫 시민들의 지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등급화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경기도에서 일어난 채식주의자 폐기 사태로 도서 검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촉발된 열람제한 사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 유관단체 역시 충청남도의회에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아래 의견서를 살피어 검열로 인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예고사항>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을 지향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15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 (자료선정 및 이용제한)

- ①충남도서관장은 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기준에 자료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자료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
- ②충남도서관장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충남도서관장은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④충남도서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

<반대 이유>

1. 개정안에 제15조 제3항은 **운영위원회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선정은 헌법이 금지된 검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정실무위원회가 그러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① 조항의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선정한다**는 도서관 사서의 고유 권한(도서 선정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도서의 반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3.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②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이라는 규정의 모호함은 도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를 쓴 것은 지난 8월 19일 예고된 조례안이 사전 검열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력한다는 문구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오히려 도서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도서 반입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헌법에 금지된 도서 검열로 이어질 우려가 큼

도서 검열은 헌법 제 21조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함.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 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며,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임.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③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를 참고하되,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의 개정안은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 도서선정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자료에 의해 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참고만 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함.

5. 개정안에 제18조의 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정 종교나 정치의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고, 도서관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 어긋남. 또한 어린이, 청소년 도서에만 별도로 기관, 단체, 주민 요청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둘 구체적 필요가 없음. 30인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고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판단과 상관없이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도서가 제한,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사항>

※ 주요 국내외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은 이를 준수해야 함.

-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2019)
-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2)
-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 - 도서관관리선언(미국도서관협회 2019)

〈의견서 제출 단체/개인〉

번호	단체	대표자명	주소
1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임옥선	충남 공주시 웅진로 135-1, 2층
2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31, 203호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4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최만정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 1층
5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차준국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33-13, 3층

6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옛길 32 태영빌딩 204호
7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최기섭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450-3
8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유희중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B116호
9	보령시민참여연대	김은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울계3길 8-11
10	사)보령장애인부모연대	이선숙	충남 보령시 명천동
11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준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0
12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남현우	충청남도 서산시 변화2로 34 서풍빌딩 2층
13	서산풀뿌리시민연대	김중현	충청남도 서산시 안건로 203 2층
14	아산YMCA	한상문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09-8 3층
15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115번길 21-8 천도교1층
16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박현서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
17	어린이책시민연대청양지회	김용실	충남 청양군 고리섬들길 68-8, 101-303
18	어린이책시민연대	유내영	충남 당진시 송산면 은곡길 68-1
19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김영미	충남 서산시 석림4 로 83 202-1503
20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구성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94번길 2 도유한의원
21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윤동권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3-8
22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 부평대로71번길 10-3 3층
23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7-13
24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조미경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25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이진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2층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 남본부	유희중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B116호

27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남궁수진, 최서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우)06939
28	젠더교육연구소 젠더너머	임난희	충남천안시서북구오성1길12-13경희빌딩201호
29	천안KYC	서진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홍은빌딩 4층 공간사이
30	천안YMCA	박성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
31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장민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0 2층
32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신언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50
33	천안여성의전화	김혜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34	천안여성회	김용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8 2층
35	청양시민연대	이상선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3길 13
36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최미자	충남 보령시
37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이용길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115번길 21-8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38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전장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8 2층
39	충남인권교육협의회	박기남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3-8
40	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	박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1길 12-13 경희빌딩 201호
41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충남천안시서북구성성7로36 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105-503
42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김예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93
43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유내영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13-1 2층
44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정상진	충청남도 예산군 신임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內 농업인회관 2층
45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강희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0길31 4층
46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김동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 8 2층

4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일지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48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20-5, 1층
49	홍성YMCA	백진숙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50번길 3 2층
50	홍성문화연대	민성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34

단체 외 개인 24명 참여.